

보 수 교 육 규 정

1986년	2월	14일	제정
1989년	7월	7일	개정
1993년	2월	17일	개정
1995년	5월	22일	개정
1998년	4월	26일	개정
1999년	12월	7일	개정
2000년	12월	2일	개정
2002년	1월	12일	개정
2008년	6월	14일	개정
2009년	11월	21일	개정
2011년	1월	8일	개정
2012년	4월	7일	개정
2012년	6월	23일	개정
2013년	10월	15일	개정
2014년	3월	2일	개정
2014년	9월	21일	개정
2014년	10월	21일	개정
2015년	2월	3일	개정
2015년	7월	14일	개정
2016년	11월	23일	개정
2017년	2월	25일	개정
2018년	9월	8일	개정
2018년	11월	26일	개정
2019년	5월	11일	개정
2019년	9월	28일	개정
2019년	12월	14일	개정
2020년	6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대한한 의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한의사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6.23. 개정)

제2조(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본회회원으로 한다.(2012.6.23. 개정)

제3조(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2012.6.23. 개정)

1. 일반 또는 전문수련한방병원의 전공의로 재직중인 자(2017.2.25. 개정)

2. 한의과대학의 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2014.3.2. 개정)

3. 의료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2012.6.23. 신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3월말 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 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부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3. 신설)(2019.5.1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동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의 보수 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12.6.23. 신설)(2019.5.11. 개정)

제4조 (보수교육기관) ① 보수교육은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위임에 따라 제2항에 규정한 교육기관이 실시한 보수교육은 본회의 중앙회가 주관 실시 한 것으로 본다. (2012.6.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2012.6.23. 신설)

1. 각 시도지부

2.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 또는 대한 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정기적 학술 간행물을 발행하는 기관 (2016.11.23. 개정)(2018.11.26. 개정)

3.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2016.11.23. 개정)

4. 기타 의료법시행규칙 및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2016.11.23. 신설)

[2012.6.23. 제목변경]

제5조(교육회기 및 이수평점) ① 보수교육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연 8점 이상 받은 교육점수는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아니 한다.(2013.10.15.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보수교육 내용은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추후 평가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교육의 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6조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 ① 보수교육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

1. 보수교육담당부서·직원구성 및 관리책임자 (2016.11.23. 개정)
2. 필요예산 확보
3.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4.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제1항 각 호의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016.11.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7조 (강사의 자격) ① 보수교육 강사는 본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대학원 및 수련한방병원 외래강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016.11.23. 개정)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재한 자 (2016.11.23. 신설)(2018.11.26. 개정)
5.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2016.11.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특정한 보수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 (2016.11.23. 개정)

③ 보수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승인요청 시 제1항에 명시된 강사의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6.11.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2.1.12.개정) (2012.6.23. 개정)

②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2018.11.26. 개정)

③ 보수교육의 연간계획은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보수교육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승인한다.

④ 승인된 연간 보수교육계획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

지한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9조 (교육계획 조정 및 협조) 각 시, 도지부장은 제8조1항의 계획수립에 앞서 보수교육의 합리적 운영과 회원의 교육 편의도모를 위하여 동일 지역내 교육기관간에 협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교육 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일자의 중복 여부
2. 교육과목
3. 교육시간 및 평점
4. 교육장소

[2012.6.23. 제목개정]

제10조(등록비) ①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강회원에게 교재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교육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2002.1.12.개정)

② 등록비는 1점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금액 및 부과 주체 등은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다.(2012.4.7.개정)

③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2012.4.7.신설)(2015.7.14.개정)(2019.9.28.개정)

④ 중앙회는 시도지부 및 기타 보수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등록비의 일정 금액을 중앙회 교육관리비용으로 송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2012.6.23.개정)

⑤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2020.6.27.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11조 (결과보고 등) ① 각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기관장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2019.5.11. 개정)

② (삭제) (2019.5.11. 삭제)

③ 제1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말까지 각 시도지부장이 본회에 보고하거나, 회원이 직접 중앙회에 평점 인정 요청할 수 있다.(2012.6.23. 개정)(2019.5.11. 개정)

④ (삭제) (2019.5.11. 삭제)

⑤ (삭제)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12조 (등록대장) ① 교육기관은 교육 시행에 있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012.6.23. 개정) (2016.11.23. 개정)

② (삭제) (2016.11.23. 개정)

③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대장을 대체하여 별도의 참석 증빙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012.6.23. 신설) (2016.11.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2019.5.11. 제목개정]

제13조 (교육내용) ①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임상한의학, 기초한의학, 한의약 최신지견, 한의약 정책현안, 의료윤리 및 의료법 등의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다. (2017.2.25. 개정)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단,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2017.2.25. 신설)

제14조 (평점) ① 보수교육의 평점 인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삭제) (2019.5.11. 삭제)

③ (삭제) (2016.11.23. 개정)

④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참가한 경우의 평점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중앙회에서 국내 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9.8. 개정)

1. 왕복 항공권
2.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
3. 학회 네임 태그 또는 사진자료

⑤ 논문평점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정기학술간행물의 게재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앙회 또는 소속지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11.23. 개정)(2019.5.11. 개정)

1. 게재된 학회지의 표지 및 목차사본
2. 제출 학회지의 해당년도 기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SCI(E) 등재 학술지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 (2016.11.23. 신설)

⑥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의 평점인정은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다. (2012.6.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15조(보수교육위원회) 정관 제6조 제3호 및 정관시행세칙 제38조 위원회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위원회를 둔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16조(지도감독) 중앙회는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평가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2012.6.23. 제목개정]

제17조(행정사항) 중앙회는 교육기관장의 보수교육 결과보고에 따라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행정조치토록 한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18조(교육계획 공고)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사전에 한의신문에 공고한다.

[2012.6.23. 제목개정]

제19조(추가교육) ① 중앙회는 보수교육미필자에 대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 미필자는 미필연도의 점수를 포함하여 연8점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3.10.15. 개정)

③ 각 시도지부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교육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2.6.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20조(기록관리) ① 교육기관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2015.7.14.개정)

② 보수교육의 모든 기록은 소정서식에 의하여 면허번호, 성명, 소속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 유예신청한 경우 및 일정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2012.6.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21조(벌칙) ① 보수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경고, 업무정지, 인증취소 등의 벌칙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와 인증취소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4.9.21. 개정)

1.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2014.9.21. 개정)

2. 승인된 보수교육과 실제 교육내용이 상이하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2014.9.21. 개정)

3. 보수교육 실시 관련 허위보고(2014.9.21. 개정)

4. 간접비 등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외에 등록비를 차등부과하는 경우(2015.7.14. 개정)

5.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2015.7.1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위원회가 교육기관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보수교육기관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2014.9.21.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22조(보칙) 이 규정의 개정은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6.23. 제목개정]

부 칙 (1)

1. 본 규정은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89년 7월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5년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6)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수교육 평점 8점이상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 (2002.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2년 1월 12일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2008.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8년 6월 14일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2009.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2011.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2012.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2012.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점인정기준 (2017.2.25. 개정)(2018.11.26. 개정)(2019.12.14. 개정)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연상한 평점
학술대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4	4
	분과학회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국제 학술대회	- (증빙자료 별도) ¹⁾	4	4
	대한한의학회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2	2
지부 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한방병원 교육	OO 한방병원 보수교육	신청·승인된 전문수련 한방병원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공공기관 보수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2	3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	3
군복무 한의사 교육 ²⁾	국군의무사령부 교육	국군의무사령부	8	8
	공보의 신규편입 직무 교육	보건복지부	8	8
	공보의 정규 교육	대한공중보건 한의사협의회	4	4
논문 게재	논문 게재 ³⁾	-	주저자 2, 공저자 1	4
중앙회 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중앙회	1	4
	학술세미나	중앙회	2	4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 ⁴⁾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이 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 2.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는 3평점, 상이 한 기관의 경우는 4평점까지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5. 시도지부 분회의 경우 주관기관은 시도지부이며, 보수교육 승인 신청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2019.5.11. 신설)

<각주>

- 1)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복무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만 참석 가능. 해당 커리큘럼도 해당 복무와 관련한 것으로 사전 승인 필요
- 3) SCI, SCI(E), KCI등재, KCI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2점, 공저자 1점
-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 1시간 또는 온라인 보수교육 1강좌당 1점 기준
 -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요,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

일반사항

교육종목 ¹⁾		교육기관 ²⁾	
교육실시일		교육장소	
예상인원		희망평점 ³⁾	
등록비 징수 여부		등록비	

세부 교육내용

시간	교육명	강사명	강사의 한의사여부	비고

1) 보수교육규정 별표1. 에 명시된 <교육 종목>중 해당 종목을 택1하여 기술

2) 보수교육규정 별표1. 에 명시된 <교육 기관>을 참고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명을 기술

3) 강사가 협회비 미체납회원인 경우, 해당 강의는 평점 부여가 불가능하며, 희망평점은 평점부여대상 강의시간의 합계 1 시간당 1점을 넘을 수 없음

보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일반사항

교육종목 ⁴⁾		교육기관 ⁵⁾	
교육실시일		교육장소	
참석인원		승인평점 ⁶⁾	

세부 교육내용

시간	교육명	강사명	강사의 한의사여부	비고

※ 참석자 명단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첨부할 것

4) 승인된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술

5) 승인된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술

6) 승인된 보수교육 평점 기술

評點履修內譯表

면허번호	성명	평점	소속지부/분회	비고

<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보고기관 :

번호	성명	면허번호	근무처		면제사유(근거서류 첨부)
			명칭	주소	

- 면제사유 : 1. 전공의
2. 한의과대학원 재학생
3.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보수교육 [] 면제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성명	면허번호	
	직종 [] 한의사		
신 청 사 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1. 전공의 [] 2.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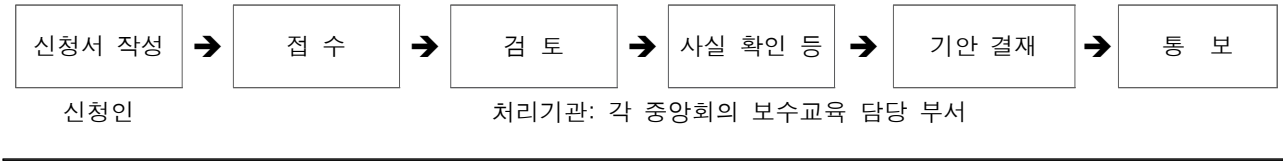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보수교육 [] 면제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직인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직인

교육일자 _____

[illegible]

< 2017.2.25.삭제>

<앞 면>

(255mm×90mm)

학술활동 보수교육 평점 신청서

성명:

면허번호:

1. 국제학술대회 참가 평점 신청

학술대회 명칭	
기간	
개최지	
홈페이지	

보수교육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왕복 항공권
- 2.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
- 3. 학회 네임 태그 또는 사진자료

2. 논문 게재 평점 신청

논문제목	학술지	출판연월	학술지구분	저자구분

학술지구분: SCI / SCI(E) / 등재지 / 등재후보지 (등재지, 등재후보지는 학술진흥재단)

저자구분: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 / 공저자

보수교육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게재된 학회지의 표지 및 목차사본
- 2. 제출 학회지의 해당년도 기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SCI(E) 등재 여부 증빙자료

부회장및이사